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김석영 연구위원

- 2015년 10월 영국 금융당국(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
 - 영국은 핀테크 영역에서 매년 약 200억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의 핀테크 허브를 유지하기 위해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FCA의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Sandbox Eligibility 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의 사업 범위, 혁신성, 소비자 편익, 필요성, 준비상태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영국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FCA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을 주도함
 -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현재 4차 모집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 FCA는 홍콩보험 당국과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도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 방안을 발표하여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추진할 예정
-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으로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 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1. 연구배경



■ 2015년 10월부터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함

- 영국은 핀테크 영역에서 매년 약 200억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의 핀테크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음¹⁾
 - FCA는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의 무결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려고 함
 -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한 Project Innovate를 시행
- Project Innovate 정책은 다섯 가지 정책수단(initiatives)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 ① Regulatory Sandbox: 준비된 혁신적인 회사(Innovative Firms)들을 지원
 - ② Request Direct Support: 혁신적인 회사들 위하여 맞춤형 규제 지원
 - ③ Advice Unit: 자동 안내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에 피드백 제공
 - ④ Reg Tech: 새로운 기술에 보다 적합한 규제에 대한 협업 및 지식 공유
 - ⑤ Engagement: 영국 및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의 핀테크 혁신 촉진
-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관련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운용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 수단임

■ FCA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하여 3차에 걸쳐 혁신적인 기업들을 모집·지원하였고, 4차 지원기업을 2018년 1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음

- 세 차례에 걸친 모집에서 총 207개의 기업이 지원하였음
 - 1차 모집(Cohort 1)은 2016년 7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9개 기업이 지원하였음
 - 2차 모집(Cohort 2)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77개 기업이 지원하였음
 - 3차 모집(Cohort 3)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61개 기업이 지원하였음²⁾

¹⁾ Regulatory sandbox,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5. 10

²⁾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3>, last updated 2017. 6. 12

■ 우리나라도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세 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함³⁾

-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규정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업법에서 금융규제의 요건과 부과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부여할 수 있는 재량 여지가 제한적임
- 따라서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 의견서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 지정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비조치 의견서는 기존 법령상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신규금융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임
- 지정대리인 제도가 활용될 경우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업에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고는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시장의 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진행상황



■ 기업이 FCA의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범위, 혁신성, 소비자 편익, 샌드박스 활용의 필요성, 준비성 측면에서 자격기준(Sandbox Eligibility Criteria)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의 사업 범위(In Scope)에서는 영국 금융시장에서 허가된 비즈니스 또는 허가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업이어야 함
- 혁신성(Genuine innovation) 기준은 현재 존재하는 기업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함을 규정함

³⁾ 금융위원회(2017. 3. 20),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

- 소비자 편익(Consumer Benefit) 측면에서는 혁신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뛰어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은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동안 계속 충족되어야 함
- 샌드박스의 필요성(Need for sandbox) 기준은 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 준비성(Background Research) 기준은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적용될 규제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줄일 방법에 대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

■ FCA는 샌드박스 수단(Sandbox tools)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⁴⁾

- 샌드박스 수단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특징과 테스트에 따라 사용됨
- 샌드박스 수단은 제한된 승인(Restricted authorization),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 규정 면제 또는 수정(Waivers or modifications to our rules), 비조치 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비공식 조정(Informal steers)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한된 승인: FCA는 규제 샌드박스에 수용된 회사에 대해 맞춤형 인증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승인 또는 등록은 회사가 동의한 아이디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에 제한됨
 - 개별지도: 규정들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를 경우 FCA는 테스트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줌
 - 규정면제 또는 수정: FCA는 테스트를 위해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은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나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면제할 수는 없음
 - 비조치 의견서: FCA는 개별 지도나 규정면제 또는 수정을 제공할 수 없지만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의 특정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없음’의 문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비공식 조정: FCA는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잠재적인 규제영향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정을 제공할 수 있음

■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선발된 기업들만이 테스트를 받게 되었음

- 규제 샌드박스 1차 모집에서는 69개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나 24개 기업만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18개 기업이 테스트되었음
 - 18개 기업은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는 FCA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밖에서 필요한 규제 허용에 대해 협의 중임
 - 18개 기업⁵⁾중 보험 관련 회사는 Blink Innovation임

⁴⁾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sandbox-tools>

〈표 1〉 규제 샌드박스 1차 모집에서 테스트된 보험회사

회사명	업무
Blink innovation	비행기가 취소되었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새로운 비행기표를 즉시 제공하는 자동 클레임처리 상품을 제공함

- 규제 샌드박스 2차 모집에서는 77개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며 31개 기업만이 자격기준을 만족하였고 최종적으로 24개 기업이 테스트되었음
 - 31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차 모집에서 테스트를 받을 예정임
 - 테스트는 단기간 소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 장치와 협의된 몇 가지 요소들을 테스트할 예정임
 - 24개 기업⁶⁾ 중 보험 관련 회사는 AssetVault, Canlon, FloodFlash, Laka, Nimbla, YouToggl임

〈표 2〉 규제 샌드박스 2차 모집에서 테스트된 보험회사

회사명	업무
AssetVault	소비자의 자산을 분류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Canlon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게 해주며 보험계약이 종료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
FloodFlash	홍수 보험 제공
Laka	계약자가 보험기간동안에 청구된 비용에 근거하여 월말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Nimbl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국 중소기업에 유연한 무역신용보험과 인보이스 관리 도구 제공
YouToggl	휴대전화 텔레매틱스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차보험 회사와 공유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만드는 앱 제공

- 규제 샌드박스 3차 모집에서는 61개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며 18개 기업이 테스트되었음
 - FCA는 현재 여전히 지원서를 받고 있음
 - 18개 기업⁷⁾ 중 보험 관련 회사는 Etherisc, Sherpa Management Services, 그리고 Wrisk임

⁵⁾ Billon, BitX, Blink Innovation Limited, Bud, Citizens Advice, DISC Holdings Limited, Epiphyte, HSBC, Issufy, Lloyds Banking Group, Nextday Property Limited, Nivaura, Otonomos, Oval, SETL, Tradle, Tramonex, Swave

⁶⁾ AssetVault, Assure Hedge, Beekin, BlockEx, Canlon, Disberse, Evaluate, Experian, FloodFlash, Laka, Money Dashboard, Moneyhub Enterprise, Nimbla, Nivaura, Nuggets, nViso, OKLink, Oraclize, Paylinko, Sabstone, Saffe, Systemsync, You Toggle, ZipZap

⁷⁾ Barclays, Barkat Ventures, Chynge, Curl, Economic Data Science, Etherisc, first direct and Bud, Future Flow, Nationwide, Orca, Rebank, ResonanceX, Sherpa Management Services, Solidi, Spherical Defence Labs, Square Book, Wrisk, Yoti

〈표 3〉 규제 샌드박스 3차 모집에서 테스트된 보험회사

회사명	업무
Etherisc	• 2016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비행기 연착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사용 • 비행기 도착이 연착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 Atlas Insurance와 협력함
Sherpa Management Services	•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가지 보험을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 모든 계약에 대해 하나의 계정과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GenRe와 협력함
Wrisk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 • 최근에 MunichRe의 디지털 파트너 모임에 합류하였음

■ 규제 샌드박스 1, 2차 모집에서는 다양한 사업 영역과 지역, 그리고 규모의 회사들이 지원하였음⁸⁾

- 소매금융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원회사가 있었고, 일반손해보험, 연금 및 퇴직소득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전체 지원회사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전역에서 지원하였으며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에서 지원한 기업들도 약 20%를 차지함
 - FCA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업을 영국으로 한정하지 않아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Barclays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나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였음
 -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FCA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FCA의 제한된 인가가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1, 2차 모집에서 보험 관련 회사들은 위험인수 능력 확대를 위해 대형보험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

- 대형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위험선호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기 어려우나 일부 대형보험회사들은 혁신적인 기업과 협력하는 데 개방적인 모습을 보임

■ FCA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샌드박스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소비자와 다른 금융기관 서비스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함

⁸⁾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

■ 한편, FCA는 홍콩보험 당국(Hong Kong Insurance Authority, 이하 'IA')과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FCA와 IA는 상대방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려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임
 - FCA는 홍콩 통화감독당국(Monetary Authority) 및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와도 비슷한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 증권 분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
- FCA는 중국, 일본, 캐나다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함

■ 영국에서 시작된 샌드박스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음

- 2016년 9월 홍콩 통화당국은 핀테크감독 샌드박스(Fin-tech Supervisory Sandbox, HKMA Sandbox)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 HKMA Sandbox는 시험시간 동안 HKMA의 일반적인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도 은행이 핀테크 및 기타 기술에 대한 파일럿 시험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6년 11월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 라인을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해 신청서 양식과 함께 발급함
 - MAS는 금융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의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최상의 금융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시사점



■ FCA는 명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체계적으로 운영

-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Project Innovate 정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 샌드박스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한적 규제하에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소규모로 테스트함

- 특별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1차 모집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4차 모집이 진행 중임
-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추진하는 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활용 회사의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검토에서부터 운영 시 필요한 규제의 면제 또는 수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 테스트베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요를 조사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 시행 후 회사들과의 다양한 협의와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회사가 생존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kiri**